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 시달

1. 평소 건축관련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을 시달합니다.
2. 우리 부는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에는 반드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18년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고, 피난동선 중간지점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대피공간의 특성상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지 않더라도 재실자가 방화문을 닫지 않을 우려가 없으며,

방화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저 또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라 성능 시험을 실시하기는 하나, 그 내부에 윤활유 등 가연재료가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이 오시공되는 경우 화재 시 오히려 위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법제처가 '18.1.22 불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하였는바,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합니다.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연기, 불꽃,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18.1.23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 신청)한 경우부터는 동 기준을 준수

※ 동 지침을 접수한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17-0542) 1부. 끝.



수신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건축기술과장, 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 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장), 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장),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강원도지사(건축과장), 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 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 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 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건축학회장, 한국건축가협회장,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 한국주택협회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방재기술평가센터장), 방재시험연구원장

주무관

이창욱

행정사무관

김부병

건축정책과 진경 2018. 4. 16.

과장 남영우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2214

(2018. 4. 17.)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835

팩스번호 044-201-5574

/ leecu22@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질의제목 :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081(2017. 9. 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같은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하며, 이하 “갑종 방화문”이라 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제2호)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 공간(제1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화구조기준”이라 함)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설치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

된 규정이고(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조 제6항제1호는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하여 요양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 충별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재실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바(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대피공간의 설치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르면 갑종 방화문은 같은 기준 제26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서는 아파트(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 및 요양병원 등에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갑종 방화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구조기준 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은 그 방화문이 대피공간인 방화구획에 설치하기 위

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적·정책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를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